

의안번호	
의 퇴 인	장종태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1.
추계번호	24C3733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6조(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)	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갖추어야 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(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물 등에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갖추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
 - 안 제16조제2항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용품의 종류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설치 의무가 부과될 시설의 종류를 알 수 없고, 이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할 보청기기 보조장비의 수를 사전에 추정하기 어려움

- 또한, 안 제16조제2항은 보청기기 보조장부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설치해야 할 장치를 특정하기 어려움
 -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크게 시설 내장형과 음향장치 부착형으로 구분되는데, 시설 내장형은 히어링루프(Hearing Loof)라는 장치로, 시설의 벽면 또는 바닥 내부에 특정 기능의 배선을 하여 난청 해소 공간을 만드는 장치이고, 음향장치 부착형은 마이크 등 음향장치에 직접 부착하여 특정 주파수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지는 장치임
 - 참고로,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2023년 47개 스마트쉼터¹⁾에 히어링루프를 설치하였는데, 용역사업의 형태가 아닌 서울시가 주관한 ‘테스트베드 서울’ 실증사업(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·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·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업)에 선정된 업체를 통해 설치한 것으로 설치 지원 단가를 추정하기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II. 부대의견

- 없음

1) 성동구 스마트쉼터란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소형 쉼터로 냉·난방기능 및 무료와이파이, 비상벨 등이 설치되어 있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